



Dictionary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지리적표시

TRIPS 협정에서 처음으로 공식사용되는 지식재산권 용어로 파리협약상의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와 리스본 협약상의 원산지 명칭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geographical origin)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가리키는 표시를 말한다(TRIP계 제 22조 제1항). 나주 배, scotch whisky 의 경우 나주와 scotch가 지리적 표시에 해당한다. TRIPS 협정은 제 22~제24조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 보호방법, 보호수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본래 지리적 표시 제도는 유럽의 포도주나 치즈 품목에서 활발하게 발달한 것으로 생산자의 신용 및 명성 보호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지역은 등록제에 의해 지리적표시를 보호해주고 있으나 기타 지역국가들은 등록제가 아닌 부정경쟁행위 규제차원에서 지리적표시 도용 및 오인, 혼동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보호를 해주고 있다. 현재 WTO/TRIPS이 사회에서는 지리적표시 보호대상 확대 및 보호수준 향상, 국제적 공동등록소 설치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다.

증거보존

정규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그 증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미리 본안의 절차와는 별도로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민사소송법 제 346조 내지 제348조)

증거방법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의 진위를 판단시키기 위하여 그 조사를 요구하고 또 법원이 사실인정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조사하는 유형물, 즉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 문서, 검증물의 5종

증거력

증거조사의 결과 법원이 입증의 객체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된 효과를 그 증거의 입장에서 보아 증거력이라고 한다.

중재

당사자간의 분쟁을 그들이 선임한 제3자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증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